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9조의4제1호 중 “투자자 등록번호를”을 “제6-1조제14호에 따른 식별수단을”로 한다.

제6-1조에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투자등록”이란 외국인이 종전의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3-23)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11조에 따라 본인의 인적 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장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13. “투자등록증”이란 종전의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1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투자등록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외국인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발급한 것을 말한다.

14. “식별수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투자등록을 한 외국인 : 투자등록증의 고유번호

나. 투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인 외국인 : 여권번호

다. 투자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법인등 :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정한 국제표준(ISO 17442)에 따라 법인에게 부여된 법인식별기호(LEI, Legal Entity Identifier)

제6-5조제2항제3호 중 “제6-12조제1항에 따라 투자등록을 신청한 자”를 “제6-1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등록을 한 자 또는 계좌를 개설한 자”로 한다.

제6-6조 중 “동 한도를 초과한 때에는”을 “동 한도를 초과한 경우 또는 취득한도의 초과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7조 제1항 중 “영 제188조 제2항 제1호 가목”을 “영 제188조 제2호 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직접투자에”를 “직접투자(사실상 직접투자를 위한 주식 취득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동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를 “동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이하 “국채 통합계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중 “외국인(제6-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투자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에 한한다)”를 “외국인”으로 하며, 같은 호 중 “결제가”를 “결제 등이”로 하고, 같은 호 중 “매매거래”를 “매매거래 또는 담보 제공”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9의2호부터 제19의5호까지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외국인간 증권의 증권시장 및 다자간 매매체결회사 외에서의 이전으로서 그 증권의 실질적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19의3.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청산에 따른 현물교부로 인한 주식의 취득 및 처분

19의4. 외국법인등이 보유한 증권의 현물배당으로 인한 증권의 취득 및 처분

19의5. 외국법인등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취득 및 처분

제6-7조 제3항 중 “대표투자자 명의의 계좌”를 “투자운용을 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 대표투자자 명의의 계좌”로 하고, 같은 항 중 “주식은 매매 다음날 까지, 채권은 결제 전까지”를 “결제 전까지”로 하고, 같은 항 중 “매매거래 전에”를 “결제 전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국외에서”를 “금융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로서 국외에서”로 하고, “제6-10조에 따라 투자등록을 완료한 다른 외국인의”를 “다른 외국인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외국인별 내부관리내역을 금융감독원장 및 거래소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를 “외국인 현황, 거래내역 등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록·유지·제공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8조제1항1호 중 “제13호 및”을 “제13호, 제15호 및”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제6-7조제1항 각 호(제6-7조제1항제18호 및 이 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7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탁결제원이 조건부매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6-8조제2항제1호 중 “합회사”를 “회사”로 한다.

제6-10조를 삭제한다.

제6-11조 중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 중 “제1항의 투자등록증”을 “투자등록증”으로 한다.

제6-12조를 삭제한다.

제6-13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 까지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 중 “제1항 각 호와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5. 무국적자 또는 이중국적자

6. 투자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 중 허위의 기재를 하였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한 자

7. 이중으로 투자등록을 신청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등

록을 신청한 자

8. 해외에서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법인등의 명의로 투자등록을 신청한 내국인

제6-14조제1항 중 “증권투자를 위하여”를 “다음 각 호의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중 “제6-11조제1항에 따른 투자등록증”을 “식별수단”으로 하며, 같은 항 중 “투자등록명의”를 “계산주체의 명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상장법인이 신규로 발행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2.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매출하는 증권 등 상장이 예정된 증권
- 제6-14조제2항 중 “제6-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투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해외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을 “해외증권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그 주식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채 통합계좌를 이용하여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을 보관 또는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예탁결제기구는 전자등록기관에 해당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제예탁결제기구가 개설한 국채 통합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채권거래내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고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14조의2 및 제6-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4조의2(계좌 개설의 특례) ① 제6-14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 등의 명의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고객자산을 구분관리하기 위한 것

임을, 제3호의 경우에는 투자자집단의 주문을 처리하기 위한 것임을, 제4호의 경우에는 외국인 통합계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국내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해외지점 또는 해외영업소 및 일본 투자자의유가증권자금등송금관련통첩(국금41271-235) 제1호에서 규정한 일본에 소재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주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외국 금융기관등이 투자자산을 자기자산과 고객자산으로 구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외국 금융투자업자, 대표투자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제6-7조 제3항에 따라 투자자집단의 주문을 일괄매매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제6-7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 통합계좌 내 외국인의 주문을 일괄주문 및 일괄결제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해외예탁기관이 주식예탁증권 및 유통주식예탁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원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외예탁기관의 자기자산 투자를 위한 계좌와 별도로 예탁증권의 원주별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해외예탁기관명 외에 예탁증권의 종류 및 원주명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외국인이 제6-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권 종목별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외국예탁기관명 이외에 증권의 종목명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제3호의 경우 투자자집단을 위하여 투자운용을 하는 자는 투자자집단에 속하는 외국인을 당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신고하여야

한다. 투자자집단에 속하는 외국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그 밖에 계좌 개설의 방법·절차, 투자자집단의 신고, 통합계좌의 관리 및 국제예탁결제기구의 외국인별 채권거래내역 보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6-14조의3(계좌 개설의 거부 등) ①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등 금융기관 은 제6-14조에 따라 계좌의 개설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개설을 거부할 수 있다.

1. 무국적자 또는 이중국적자

2. 제6-13조제2항에 따라 투자 등록을 취소당한 자로서 취소 후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3. 계좌개설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 중 허위의 기재를 하였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한 자

4. 제6-14조제1항 각 호의 증권에 투자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실질적인 경영 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법인등의 명의로 계좌의 개설을 신청한 내국인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 개설을 신청한 자

②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등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매매거래 등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이 규정,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을 위반한 자

3. 증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결제기일로부터 5 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제6-15조제1항 중 “투자등록한 외국인은”을 “외국인은”으로 한다.

제6-21조제1항 중 “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야 한다.”를 “에 보관(전자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증권의 권리 행사 또는 실물확인을 위한 실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6-26조제1항 · 제3항 및 제4항 중 “제6-10조 · 제6-14조”를 각각 “제6-14조”로 한다.

제6-31조제3항제2호 중 “외국인투자등록번호”를 “제6-1조제14호에 따른 식별수단”으로 한다.

제6-31조의2제1항제2호 중 “외국인투자등록번호”를 “제6-1조제14호에 따른 식별수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제18호의 개정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등의 투자등록 제도 폐지에 따른 외국인의 증권 등의 거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10조에 따라 투자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이 이 규정 시행 이후 매매거래 계좌를 새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등록을 한 때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신 설>

제6-5조(외국인 주식취득한도의 계산기준) ① (생략)
② 영 제18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 1인의 종목별 주식 취득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동일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 2. (생략)
3. 제6-12조제1항에 따라 투자 등록을 신청한 자는 별도로

융감독원장이 투자등록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외국인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발급한 것을 말한다.

14. "식별수단"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투자등록을 한 외국인 : 투자등록증의 고유번호
나. 투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인 외국인 : 여권번호
다. 투자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법인등 :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정한 국제표준(ISO 17442)에 따라 법인에게 부여된 법인식별기호(LEI, Legal Entity Identifier)

제6-5조(외국인 주식취득한도의 계산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6-1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하나의 외국인으로 본다.

제6-6조(외국인 주식취득한도의 확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 개업자는 외국인으로부터 증권의 매수주문을 받은 때에는 제6-2조 및 영 제1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취득한도의 초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동 한도를 초과한 때에는 당해 주문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6-7조(증권 매매거래의 제한 등) ① 영 제188조제2항제1호 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상장증권을 매매 외의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거래 할 수 있다.

1. 직접투자에 의한 주식취득
또는 직접투자로 취득한 주

당하는 경우로서 투자등록을
한 자 또는 계좌를 개설한
자-----
-----.

1. 직접투자(사실상 직접투자를 위한 주식취득을 포함하며,

식의 처분

2. ~ 13. (생 략)

14.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증권의 매매거래

15. ~ 17. (생 략)

18.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예탁결제기구(이하 “국제예탁결제기구”라 한다)내에 결제계좌를 가지면서 동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제6-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투자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에 한한다) 간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는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 매매거래

19.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2. ~ 13. (현행과 같음)

<삭 제>

15. ~ 17. (현행과 같음)

18. -----

----- 동국

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

좌(이하 “국채 통합계좌”라 한다)----- 외국인

----- 결제 등이 --

--- 매매거래 또는 담보 제공

19. (현행과 같음)

19의2. 외국인간 증권의 증권

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의 이전으로서 그 증

권의 실질적 소유자가 변경

되지 않는 경우

19의3.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청산에 따른 현물교부로 인

한 주식의 취득 및 처분

19의4. 외국법인등이 보유한

<신 설>

20. (생 략)

② (생 략)

③ 투자자집단을 위하여 투자 운용을 하는 자는 영 제188조 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대표투자자 명의의 계좌 또는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집단의 주문처리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통해 주식 또는 채권을 일괄주문의 방법으로 매매하고 주식은 매매 다음날 까지, 채권은 결제 전까지 투자자집단에 속하는 외국인들에게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분대상 외국인은 투자운용자가 매매거래 전에 당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신고한 자에 한한다.

④ ~ ⑥ (생 략)

⑦ 국외에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있는 외국 금융투자업자

증권의 현물배당으로 인한
증권의 취득 및 처분

19의5. 외국법인등의 분할합병

으로 인한 주식의 취득 및
처분

2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투자운
용을 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
대표투자자 명의의 계좌 -----

----- 결제 전까지 -----

-- 결제 전에 -----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금융투자업자 또는 일반사
모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로서 국외에서 -----

는 제6-10조에 따라 투자등록
을 완료한 다른 외국인의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결
제하기 위한 본인 명의의 계좌
(이하 "외국인 통합계좌"라 한
다)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
다.

⑧ 외국인 통합계좌를 운영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외국인 통합계좌로 주식을 결제한 경우 직접 또는 상임대리인을 통하여 외국인 통합계좌 내의 외국인별 내부관리내역을 금융감독원장 및 거래소에 자체업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 체결회사 외에서의 양수·양도 의 신고) ① 외국인이 제6-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상장증권을 양수·양도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6-7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 제13호 및

-- 다른 외국인의 -----

⑧ _____

외국인 현황, 거래내역 등 운
영과 관련한 자료를 금융감독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
록·유지·제공하여야 한다.

1. -----
----- 제13호, 제15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당해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전자등록기관 또는 증권금융회사로 하여금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자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 4. (생략)

<신설>

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제6-7조제1항 각 호(제6-7조제1항제18호 또는 이 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자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7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탁결제원이 조건부매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생략)

1. 외국인이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합회사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감자, 주식의 병

② (현행과 같음)

1. -----
--- 회사 -----

합 등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으로 하여금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취득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 3. (생략)

제6-10조(투자등록신청 등) ①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최초로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상장법인이 신규로 발행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2.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매출하는 증권

② 외국인은 제1항에 따라 투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계산주체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등록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2. ~ 3. (현행과 같음)

<삭 제>

1. 해외증권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2. 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증권시장에서 취득(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전자등록기관에 계좌관리기관 등 자기계좌를 개설한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로 투자등록을 하고 동 계좌를 이용하여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해당 국제예탁결제기구에서 동 기구의 명의로 투자등록을 한 외국인의 채권거래내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고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투자등록한 외국인이 투자자집단에 속하는 경우 투자자집단을 위하여 투자운용을 하는 자는 이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투자등록의 방법 ·
절차, 투자자집단의 신고 및
국제예탁결제기구의 외국인 채
권거래내역 보고방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
원장이 정한다.

제6-11조(외국인투자등록증의 발
급) ① 금융감독원장은 투자등
록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외국인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
여 투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
라 투자등록증을 발급하는 때
에는 외국인투자등록부에 투자
등록의 주요 내용을 기록 · 유
지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이 제1항의 투자등록
증을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거
나 투자등록신청서 중 인적사
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서
또는 구투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투자등록증
의 재발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12조(투자등록의 특례) ①

제6-10조제2항에 불구하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6-11조(외국인투자등록증의 발
급 <삭 제>

<삭 제>

③ ----- 투자등록증 -----

<삭 제>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 등의 명의로 별도의 투자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고객자산을 구분관리하기 위한 것임을, 제3호의 경우에는 투자자집단의 주문을 처리하기 위한 것임을, 제4호의 경우에는 외국인 통합계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부기하여야 한다.

1. 국내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 개업자의 해외지점 또는 해외영업소 및 일본투자자의 유가증권자금등송금관련통첩(국금41271-235) 제1호에서 규정한 일본에 소재하는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 개업자가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주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외국 금융기관등이 투자자산을 자기자산과 고객자산으로 구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 개업자가 제6-7조제3항에 따라 투자자집단의 주문을 일괄매

매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
해서 필요한 경우

4.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제6-7
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 통합
계좌 내 외국인의 주문을 일
괄주문 및 일괄결제의 방법
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
한 경우

② 해외예탁기관이 주식예탁증
권 및 유통주식예탁증권을 발
행하기 위하여 원주를 취득하
고자 하는 때에는 해외예탁기
관의 자기자산 투자를 위한 투
자등록과 별도로 예탁증권의
원주별로 투자등록하여야 하
며, 이 경우 등록명의는 당해
해외예탁기관명 외에 예탁증권
의 종류 및 원주명을 함께 기
재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이 제6-7조제1항제8
호 및 제9호에 따라 증권을 취
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권 종
목별로 투자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명의는 당해 외국
예탁기관명 이외에 증권의 종
목명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4호에 따라 투자등
록을 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

는 직접 또는 상임대리인을 통하여 외국인 통합계좌 내의 외국인 목록과 그 투자등록 정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통합계좌 내의 외국인 목록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정보를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3조(투자등록의 거부 또는 취소 등) ① 금융감독원장은 제6-10조에 따라 투자등록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무국적자 또는 이중국적자
2. 제2항에 따라 투자등록을 취소당한 자로서 취소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투자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 중 허위의 기재를 하였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한 자
4. 이중으로 투자등록을 신청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등록을 신청한 자
5. 제6-10조제1항의 증권에 투

제6-13조(투자등록의 취소 등)

<삭 제>

자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법인등의 명의로 외국인 투자등록을 신청한 내국인

②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투자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 4.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③ 금융감독원장은 외국인이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② -----

--.

<삭제>

2. ~ 4. (현행과 같음)

5. 무국적자 또는 이중국적자

6. 투자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 중 허위의 기재를 하였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한 자

7. 이중으로 투자등록을 신청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등록을 신청한 자

8. 해외에서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법인등의 명의로 투자등록을 신청한 내국인

③ -----
제2항 각 호 -----

필요한 경우 외국법인 등의 임원 현황, 재무제표,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실적에 관한 사항, 외국인 통합계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생략)

제6-14조(계좌의 개설) ① 외국인이 증권투자를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은 제6-11조제1항에 따른 투자등록증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등 금융기관에 제시하고 투자등록명의로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민대우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6-1조제2호의 내국민대우 외국인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four horizontal dashed lines for letter formation.

④ (현행과 같음)

제6-14조(계좌의 개설) ① -----
----- 다음 각 호의 증권을 취
득 또는 처분하기 위하여 -----

식별수단

계산주체의 명의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상장법인이 신규로 발행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매출하는 증권 등 상장이

② 제6-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투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해외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는 본점에 1개의 해외증권관련주식 매도전용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예정된 증권

② 해외증권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그 주식을 -----

-----.

③ 국채 통합계좌를 이용하여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을 보관 또는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예탁결제기구는 전자등록기관에 해당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로 계좌를 개설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제예탁결제기구가 개설한 국채 통합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채권거래내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고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14조의2(계좌 개설의 특례)

① 제6-14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 등의 명의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고객자산을 구

분관리하기 위한 것임을, 제3호의 경우에는 투자자집단의 주문을 처리하기 위한 것임을,
제4호의 경우에는 외국인 통합 계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국내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 개업자의 해외지점 또는 해외영업소 및 일본투자자의 유가증권자금등송금관련통첩(국금41271-235) 제1호에서 규정한 일본에 소재하는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가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 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주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외국 금융기관등이 투자자산을 자기자산과 고객자산으로 구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외국 금융투자업자, 대표투자자,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가 제6-7조제3항에 따라 투자자집단의 주문을 일괄매매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제6-7

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 통합
계좌 내 외국인의 주문을 일
괄주문 및 일괄결제의 방법
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② 해외예탁기관이 주식예탁증
권 및 유통주식예탁증권을 발
행하기 위하여 원주를 취득하
고자 하는 때에는 해외예탁기
관의 자기자산 투자를 위한 계
좌와 별도로 예탁증권의 원주
별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해외예탁기관명
외에 예탁증권의 종류 및 원주
명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이 제6-7조제1항제8
호 및 제9호에 따라 증권을 취
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권 종
목별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당해 외국예탁기
관명 이외에 증권의 종목명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경우 투자자
집단을 위하여 투자운용을 하
는 자는 투자자집단에 속하는
외국인을 당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신고하여
야 한다. 투자자집단에 속하는

외국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 한 같다.

⑤ 그 밖에 계좌 개설의 방법

· 절차, 투자자집단의 신고, 통합계좌의 관리 및 국제예탁결제기구의 외국인별 채권거래내역 보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6-14조의3(계좌 개설의 거부

등) ①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등 금융기관은 제6-14조에 따라 계좌의 개설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개설을 거부할 수 있다.

1. 무국적자 또는 이중국적자
2. 제6-13조제2항에 따라 투자등록을 취소당한 자로서 취소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계좌개설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 중 허위의 기재를 하였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한 자

4. 제6-14조제1항 각 호의 종권에 투자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법인등의 명
의로 계좌의 개설을 신청한
내국인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 개설을 신청한 자

②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
자등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해서는 매매거래 등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이 규정, 그 밖에 금융감독
원장의 명령을 위반한 자

3. 증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
여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
을 결제기일로부터 5일 이내
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제6-15조(다계좌의 개설) ① 투
자등록한 외국인은 투자자산의
구분관리를 위하여 투자계정별
로 매매거래계좌(이하 "다계좌"
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생략)

제6-21조(증권의 보관등) ① 외
국인은 취득한 증권(제6-7조제
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취
득 또는 처분하는 증권은 제외

제6-15조(다계좌의 개설) ① 외
국인은 -----

-----.

② (현행과 같음)

제6-21조(증권의 보관등) ① ---

<p>④ 정부가 국내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대하여는 제6-7조, <u>제6-10조 · 제6-14조</u> · 제6-15조 및 제6-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④ ----- ----- ----- <u>제6-14</u> 조----- -----.</p>
<p>제6-31조(순보유잔고의 보고)</p>	<p>제6-31조(순보유잔고의 보고)</p>
<p>① ~ ② (생 략) ③ (생 략) 1. (생 략) 2. 매도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주소, 국적,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u>외국인투자등록번호</u> 등), 연락처 등 인적사항(매도자의 대리인이 보고하는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p>	<p>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 <u>제6-1조제14</u> 호에 따른 식별수단 --), --- ----- ----- ----- -----</p>
<p>3. (생 략) ④ ~ ⑥ (생 략)</p>	<p>3.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6-31조의2(순보유잔고의 공시)</p> <p>① (생 략) 1. (생 략) 2. 매도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주소, 국적, 생년월일(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u>외국인투자등록번호</u>를 말한다) 등의 인적사항(매도자의 대리인이 공</p>	<p>제6-31조의2(순보유잔고의 공시)</p> <p>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 <u>제6-1조제14</u> 호에 따른 식별수단----), - -----</p>

시하는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시장과	자본시장감독국
연락처	02-2100-2656	02-3145-7590